

## 고용촉진장려금(특별고용촉진)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감원방지위반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(특별고용촉진)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05. 26.

#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지 청 장



1. 건 명 : 고용촉진장려금(특별고용촉진)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(의견제출통지)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

사업장명	지원금명 (대상자)	지급일	지원기간	회수금액	처분명	처분 사유	송달불능 사유	주소
(주)세진 ○○○	고용촉진장려금 (특별고용촉진) (박○겸)	2021.08.20.	2021.06.01. ~ 2021.07.31.	2,000,000원	고용촉진장려금 (특별고용촉진)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 (의견제출 기한: 2022.06.09.)	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감원방지기간 (2021.05.02.~2021.11.30.) 내에 해당 근로자를 감원(2021.08.30.)	수취인 불명	* 사업장 주소: 인천시 서구 가정로 44-6 * 대표자 주소: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팬더빌라 3동 302호

4. 공고기간 : 2022. 05. 26. ~ 2022. 06. 09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노동고용청 인천서부고용센터 박은영(Tel 032-540-20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